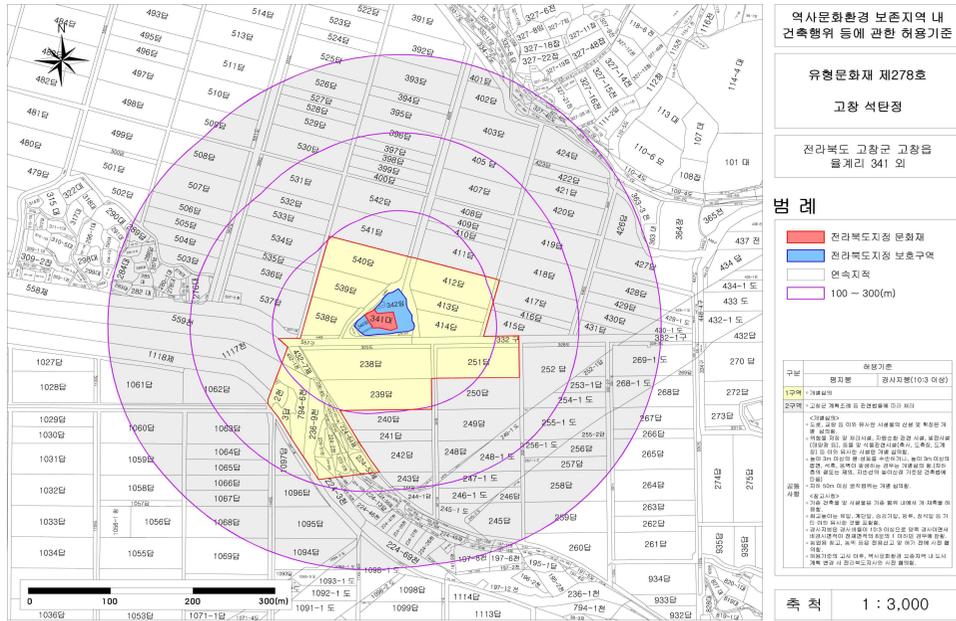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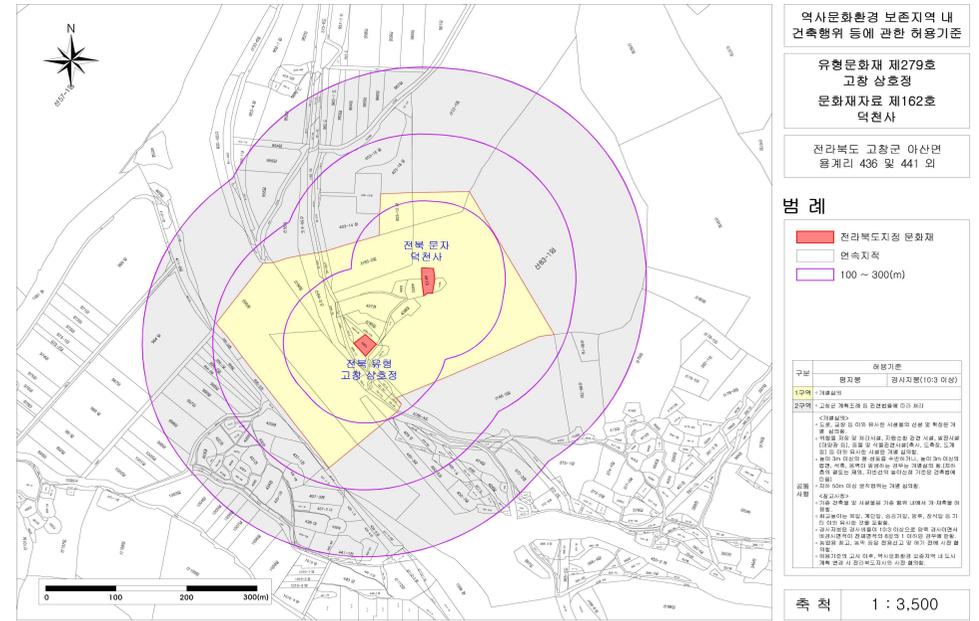


1. 고창 석탄정(기념물 제278호)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고창군 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개별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계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농업용 창고, 농막 등은 전용신고 및 허가 전에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2. 고창 삼호정(유형문화재 제279호), 덕천사(문화재자료 제162호)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고창군 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p><개별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계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p><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농업용 창고, 농막 등은 전용신고 및 허가 전에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전라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